

수 신 : 대구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장
경 유 : 행정담당자
제 목 : 2016년 두루바른언어심리임상센터_원주 언어재활사 모집

1. 귀 기관(학과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16년 두루바른언어심리임상센터_원주 언어재활사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 드리오니,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채용 개요

- 모집부문 : 언어재활사 2명
- 접수기간 : 2016년 11월 28일(월) ~ 채용시까지

나. 협조 요청 사항

- 각 학과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고 게재(첨부)
- 각 학과 졸업생들에게 안내문 발송(첨부)

다. 기타

- 문의사항은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 인사담당자(033-743-7575)에게 연락바랍니다.
-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(채용공고, 채용서식)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





두루바른 사람들 모집

재활치료사들이 만든 착한기업, 바른 지료를 위한 안정된 직장!
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두루바른 사람을 찾습니다.

2016년 11월 28일
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

1. 기관소개

- 설립일 : 2014년 1월 18일
- 법인형태 : 보건복지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(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)
-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비영리 착한 기업입니다. 재활치료(언어치료, 감각통합 등)와 심리상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법인 소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- 사회적협동조합이란?
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,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입니다.

2. 모집요강

채용제목	원주센터 언어재활사		
모집작종	언어재활사	모집인원	고용형태 별 1명
학력	관련 학과 졸업	경력	무관 (경력자 우대)
고용형태	- 계약직 풀타임 (월~금 09:00~18:00 / 통상근무 또는 단속 근무 가능) - 파트타임 (주 12시간 이하)		
급 여	- 계약직 풀타임 : 급여타이블에 준함. 경력 인정하여 급여 책정. - 파트타임 : 비율제		
우대조건	■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■ 장애인 ■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■ 관련 업무 유경험자 ■ 인근 거주자 ■ 협동조합 및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■ 차량소지자		

3. 전형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수시접수
- 접수방법
- 이메일 : durubarun@gmail.com
- 전형절차 : 1차 서류전형
- 2차 면접(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일정 개별 통보)
- 제출서류 : 이력서 / 자기소개서 / 추천서 / 자격증사본

4. 문의

- 연락처 : 전화 033.743.7575 | FAX : 070.4275.5758
- E-mail : durubarun@gmail.com
- 홈페이지 : www.durubarun.com
- 회사주소 : (220-150)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5-2, 301호(무실동 1722-7)

5. 기타

-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으며, 이 기간 약정된 급여의 80%를 지급합니다.
- 지원자를 위해 면접 날짜나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.
- 조합원 모집 아닌 직원 모집이며, 추후 교육을 통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응시원서 작성요령

1.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룬 받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.
2.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**응시자 본인의 불이행**이 될 수 있습니다.
3. 『응시원서』는 아래의 <<작성요령>>에 따라 작성해주세요.
4. 최종합격 후 추가 서류를 제출 시 사실이 아닐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<<작성요령>>

- ① 학 력 : 고등학교 이상, 졸업 외에 재학·휴학·수로·중퇴인 경우도 기재해 주세요.
- ② 경 력 : 행정기관,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되, 경력증명서 제출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기재하세요(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).
※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합니다.
- ③ 자격증 : 해당 자격증 명을 기재하되,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을 제출하세요
(자격증 사본 미제출시 불인정).
※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합니다.
- ④ 추천서 : 추천인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, 부모 및 친구 등 본인을 지지하는 지인 모든 이가 작성 가능합니다.
- ⑤ 기타 : 장애여부, 보훈대상자 및 취약계층(참고 1)은 작성 시 입사 후 복지카드 또는 확인서 제출하세요.

- * 자격증 사본은 이력서 제출 시, 경력증명서는 합격 후 제출바랍니다.
- * 자기소개서와 입사추천서는 2장 이내로 기술 바랍니다.

응시원서

지원분야 : 언어재활사 □ 계약직풀타임 □ 파트타임 (지원 고용 형태에 ■ 표시)

사진부착 (3×4cm, 이미지 파일)	성명	한글	영문	성별
	현주소	생년월일		
	출생지	영역사항		필 / 면제 / 미필
	e-Mail	휴대폰		영역구분 / 영문번호
자택전화				

학 교 명	재 학 기 간	전 공	수 학 구 분	직 종 학 교 종 원 (정/원)
고등학교				/
대학교				/
				/

기 관 명	근 무 기 간	근 무 부 서	담 당 업 무	퇴 직 사 유

자 격 및 면 허		자 격	발 급 기 관
자격명	취득일자		

수 상 명	내 용	수 상 일 자	기 관

기 타	장 애 여 부	보훈대상	취약계층	치량소지

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 : (서명)

자 기 소 개 서

1. 성장과정	
2. 성 격 (장·단점)	
3. 학교생활 및 주요경력 · 활동	
4. 지원동기	
5. 입사 후 포부	

년 월 일

작성자 : (서명)

입사추천서

추천 대상 :

추천인	성명	관계	
	직업	직위	
추천경위			
추천사유			
특기사항			

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

년 월 일

추천인 : (서명)

[참고 1]

■ 취약계층의 범위 ■

(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2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

1.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
2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령자
3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 장애인복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
5.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
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7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8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9. 「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10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경성보호대상자
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- 나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12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할 사람

가. 1년 이상 장기 실직자

- 나.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(단, 노역유치자는 제외)

다. 「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

라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관찰 정소년(보호관찰기간 중인 자)

마. 노숙인

바.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

사. 성전성 또는 회귀 난치병 치료자

아.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, 외국인근로자,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(신용등급 7~10등급), 학교폭력피해자,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